

##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(2차) [ 구입형 · 렌탈형 · S/W형 ]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니,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▼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바로가기



2026년 8월 26일  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###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☆

#### ❶ 무엇을 지원해주나요?

☞ S/W기술(경영관리·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),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사이니지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.

#### ❖ [추가지원 안내]

\* p20 FAQ하단표 참고

- ① 기존 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→ **보편·일반 기술 신청 가능**
- ② 기존 보편·일반 기술 수혜자 → **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**
- ③ 기존 보편·일반·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→ **S/W형 신청 가능**
- ④ 기존 S/W 기술 수혜자 → **보편·일반·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**

★ **보편·일반↔배리어프리 간 추가지원은 본 공고 마감으로 종료 (추가지원 없음)**

#### ❷ 얼마나 지원해주나요?

☞ 참여유형 및 도입 희망기술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(한도)은 달라집니다.

❖ ① **(구입형)** 최대 500만원 (배리어프리 기술은 최대 700만원)

② **(렌탈형)** 연 최대 350만원 (최대 2년)

③ **(S/W형)** 연 최대 30만원 (최대 2년)

★ 단,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

#### ❸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☞ **스마트상점 홈페이지**([www.sbiz.or.kr/smsst/index.do](http://www.sbiz.or.kr/smsst/index.do))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 
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만 신청가능하며, 등록된 기술 이외 지원은 불가합니다.

#### ❹ 궁금한 점이 있어요!

☞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**전문기관(☎1600-6185)으로 연락** 바랍니다.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,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.

## 1. 지원 내용

□ **(목적)** 소비·유통환경의 비대면·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\*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

\*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

□ **(지원대상)**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\*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
\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[sminfo.mss.go.kr](http://sminfo.mss.go.kr))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

□ **(지원금액)** 참여 유형 및 지원기술에 따라 지원한도(금액) 상이

| 구분             |     | 구입형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렌탈형                         | S/W형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| 보편                   | 일반           | 배리어프리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                    | 가맹본부 |
| 지원 내용          |     | 전자철판,<br>사이니지<br>구입비 | 일반 기술<br>구입비 | 배리어프리<br>무인정보단말기<br>구입비 | 배리어프리<br>무인정보단말기,<br>로봇 렌탈비 | 소프트웨어<br>구독료           |      |
| 지원 한도          |     | 500만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00만원                   | 연 350만원<br>(최대 2년)          | 상점 당 연 30만원<br>(최대 2년) |      |
| 국비<br>지원<br>비율 | 일반  | 50%                  | 70%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            | 90%  |
|                | 우대* | 60%                  | 80%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80%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세부내용           |     | p3~4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p4~5                        | p6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\*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 : ❶ 장애인 사업주, ❷ 간이과세자, ❸ 1인 자영업자  
(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)

### < 우대 대상별 증빙서류 >

| 구분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애인 사업주 | 장애인기업 확인서<br>또는 장애인증명서(대표자) | 공공구매종합정보<br>( <a href="http://www.smpp.go.kr">www.smpp.go.kr</a> )           | 필수제출                    |
| 간이과세자   | 사업자등록증명원(간이과세자)             |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<br>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| 마이데이터<br>동의 시<br>생략 가능* |
| 1인 자영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사업장)    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<br>( 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 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단, 마이데이터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

## 2.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

### 1 구입형

#### ① (지원내용) 보편·일반·배리어프리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지원

-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\*에서 직접 선택

\* 경로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→ 상단 [스마트기술] → [기술현황] → 유형 '구입형' 선택

-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등록

#### ② (국비 지원방식)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납부내역과 보급기술 설치여부를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을 입금

\*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

##### < 기술도입비 입금방법 예시 >

| 기술 공급가액 : (구입형/일반기술) 500만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국비지원(70%)                  | ○ 350만원 국비지원(70%) | 공단 → 공급기업 입금        |
| 자부담금(30%)                  | ○ 150만원 자부담금(30%) | 소상공인 → 공급기업 입금      |
| 부가가치세(10%)                 | ○ 50만원 부가가치세(10%) | (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) |

#### ③ (자부담금)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,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

- (계산방식) 총부담금 = 자부담금(기술공급가-국비) + 부가가치세

##### < 소상공인 자부담금 (예시) >

| 유형          | 기술공급가(A)       | 국비지원(B) | 자부담금 (C=A-B) | 부가가치세 (D=A*10%) | 총 부담금 (C+D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<br>입<br>형 | 보편<br>(50%)    | 500만원   | 250만원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| 30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100만원 | 500만원        | 110만원           | 71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| 일반<br>(70%)    | 500만원   | 150만원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100만원 | 600만원        | 110만원           | 71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| 배리어프리<br>(70%) | 700만원   | 210만원        | 70만원            | 280만원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100만원 | 400만원        | 110만원           | 510만원       |

- (납부방법)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하며, 구입형의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①계좌이체, ②신용카드 결제가 있음

\*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, 공급기업에 결제 및 할부이자 발생 여부 확인 필요

| 구 분  |         | 납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좌이체 | 일시납     | 소상공인 <b>본인명의 통장</b> 에서 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 | 이체확인증*          |
| 신용카드 | 일시납, 할부 | 소상공인 본인(또는 법인) 명의 카드로 결제                | 매출전표, 이용대금명세서** |

\* (이체확인증) 출금자명, 입금자명, 출금계좌번호, 입금계좌번호 반드시 표기

\*\* (이용대금명세서)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인지 식별가능한 정보 반드시 표기

- ④ (추가지원) 과거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아래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

★ 보편·일반↔배리어프리 간 추가 지원은 본 공고 마감과 함께 종료

- (보편·일반 기술 수혜자) 과거 보편·일반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700만원 한도 내 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
  - \* 단, 보편·일반 기술은 추가 지원 불가능하며 배리어프리 기술만 추가 지원 가능
- (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) 과거 배리어프리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500만원 한도 내 보편·일반 기술 신청 가능
  - \* 단, 배리어프리 기술은 추가 지원 불가능하며 보편·일반 기술만 추가 지원 가능
- (S/W형 수혜자) 과거 S/W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편·일반·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

## 2 렌탈형

- ① (지원내용) 배리어프리·로봇기술 렌탈비용 지원 (최대 2년, 1+1)

-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\*에서 직접 선택
  - \* 경로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→ 상단 [스마트기술] → [기술현황] → 유형 '렌탈형' 선택
-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, 연간(1년 단위) 렌탈비용으로 등록

**② (국비 지원방식)** 공단은 소상공인 1개월 차 자부담금 납부내역과 보급기술 설치여부를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을 입금

\*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

- 국비는 연 단위로 지원되며, 2년차 지원 시 추가 증빙자료\* 제출 필수

\* 추가 증빙자료 미제출, 기술 미활용 시 2년차 국비 지원 불가

**③ (자부담금)**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,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

- (계산방식) 총부담금 = 자부담금(기술공급가-국비) + 부가가치세

\* 소상공인은 총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납입(공급기업별 산출 내역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총부담금은 동일)

< 소상공인 자부담금 (예시) >

| 유형      | 기술공급가(A) | 국비지원(B) | 자부담금<br>(C=A-B) | 부가가치세<br>(D=A*10%) | 총 부담금<br>(C+D)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렌탈형(연간) | 500만원    | 350만원   | 150만원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|
|         | 600만원    | 350만원   | 250만원           | 60만원               | 310만원          |

- (납부방법)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(자동이체(분납)만 가능)

\* 계약서 및 입금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

< 소상공인 월 납부금 계산 (예시) >

· 가정 : 서빙로봇(연 렌탈료 4,800,000원)을 2년/3년 렌탈계약으로 보급받은 경우

| 구분               | 월 렌탈료    | 월 국비지원금<br>(렌탈료 70%) | 월 자부담<br>(렌탈료 30%+부가세) | 총 국비지원금    | 총 자부담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서빙로봇(2년)         | 400,000원 | 280,000원             | 160,000원               | 6,720,000원 | 3,840,000원 |
| 서빙<br>로봇<br>(3년) | 400,000원 | 280,000원             | 160,000원               | 6,720,000원 | 9,120,000원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0원                   | 440,000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
\* 3년 계약 시, 3년차부터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월렌탈료 전액 소상공인이 납부

**④ (추가지원)** ①보편·일반 기술 수혜자 → 연 350만원 한도 내 배리어프리 기술 추가지원 가능, ②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→ 로봇 기술 추가 지원 가능 ③S/W 기술 수혜자 → 렌탈형 기술 추가지원 가능

### 3 S/W형

#### ① (지원내용) S/W의 구독료 지원 (최대 2년, 1+1)

-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\*에서 직접 선택

\* 경로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→ 상단 [스마트기술] → [기술현황] → 유형 'S/W형' 선택

-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, 연간(1년 단위) 구독료 기준으로 등록

#### ② (국비 지원방식) 공단은 소상공인 총 부담금 납부내역과 사용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(1년 구독료) 입금

\*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

#### ③ (자부담금) 국비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(가맹본부)이 부담하며,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

- (계산방식) 총부담금 = 자부담금(기술공급가-국비) + 부가가치세

< 소상공인(가맹본부) 자부담금 (예시) >

| 유형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기술<br>공급가(A) | 국비<br>지원(B) | 자부담금<br>(C=A-B) | 부가가치세<br>(D=A*10%) | 총 부담금<br>(C+D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S/W<br>(연간) | 개별 소상공인            | 30만원         | 30만원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| 3만원                | 3만원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가맹본부<br>(100개인 경우) | 3,000만원      | 2,700만원     | 300만원           | 300만원              | 600만원          |

★ 개별 소상공인 ☞ 자부담금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

가맹본부 ☞ ① 자부담금(공급가액의 10%)과 부가가치세 납부

② 지급보증보험 발급 (국비 지원금(공급가액의 90%))

- (납부방법)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(계좌이체만 가능)

\* (이체확인증) 출금자명, 입금자명, 출금계좌번호, 입금계좌번호 반드시 표기

\*\* 소상공인(가맹본부)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공급기업에게 제출

#### ④ (추가지원)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보편·일반·배리어프리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도 추가지원 가능

\* 단, ① '24~25년 S/W 기술(舊.SaaS)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, 추가 지원 불가

② 지원 기술을 변경(고객관리→재고관리 등)하여 재신청하는 경우도 불가

#### ⑤ (중복불가) 소상공인(가맹본부)은 1개의 S/W 기술만 신청 가능

#### ⑥ (활용도 점검) 로그기록 등을 활용하여 기술 이용 및 활용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, 점검 결과를 향후 지원 및 계약연장 등에 활용

### 3. 신청 방법

□ (신청기간) 2026년 8월 26일(수) 10시 ~ 9월 30일(수) 17시까지

\*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몰려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접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.

□ (신청자격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\*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
\* S/W 가맹본부 신청대상은 가맹본부(브랜드별 200개 미만)이며 지원대상은 가맹점(소상공인)

□ (신청방법) 홈페이지 접수([www.sbiz.or.kr/smst/index.do]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)

① (회원가입)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
② (사업신청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\* 유형별 자세한 신청절차는 [(붙임) 사업신청 매뉴얼]을 참고

- (신청서 작성) 사업신청 시, <sup>1)</sup>업체소개, <sup>2)</sup>지원동기, <sup>3)</sup>활용계획 등을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

\* 신청서 기재내용은 선정평가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,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업장 현황에 맞춰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

\*\* 동일·유사 내용의 반복 기재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·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,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음

\*\*\* S/W 가맹본부 유형의 경우, 신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음

#### < 신청서 작성 (예시) >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체소개 | 본 사업장은 2018년부터 ○○시에서 운영중인 한식 음식점으로,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일 평균 방문객은 약 80명 수준이며, 점심·저녁 피크시간대 주문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수기 주문 및 일반POS를 사용중이라 주문 누락 및 회전을 저하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.          |
| 지원동기 | 최근 구인난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, 주문결제 과정의 비효율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매장 운영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활용계획 | 도입예정인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 주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, 직원은 조리 및 고객 응대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의무사용기간과 성과조사 참여기간도 인지하고 있으며, 불가피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시 양도양수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. |

- **(희망순위 선택)** 소상공인은 복수의 스마트기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술에 대해 **희망 도입순위를 반드시 선택**하여야 함
  - \* 배리어프리 기술을 신청한 경우, 정책적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자가 기재한 희망 도입순위와 관계없이 배리어프리 기술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
- **(대리신청 불가)**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접수된 서류는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□ **(신청서류)** 신청 시,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

① **구입 · 렌탈 · S/W(개별)형**

| 구분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식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필수 |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(매장사진 포함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<br>입력       |
|   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|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선택 | 우대<br>대상             | 장애인 사업주 | 장애인기업확인서 / 장애인증명서(대표자) | 파일제출<br>(시스템첨부)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간이과세자   |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인 자영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\* 공단은 체납여부, 소상공인 여부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나,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

\*\*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을 하여야 하며, 불응시 탈락 처리

② **S/W(가맹본부)형**

| 구분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 |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<br>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사업 참여 협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① 사업 참여 가맹점 명단 → [별첨] 파일 작성·제출<br>② 가맹본부(법인 및 대표자 개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<br>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 포함)<br>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보공개서 | pdf 파일제출<br>(신청일 기준<br>유효기간<br>이내 증명서) |
| 선택 | 기업 소개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사업참여 동의한 가맹점에 한하여 명단 제출, 가맹본부 선정 이후 가맹점 추가동의 확인

☐ **(지원제외)*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사업 신청불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(p29, 참고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비영리사업자일 경우(단,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는 경우(예비창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신청일부터 지원사업 추진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(휴·폐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국세·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(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<br>* 단, <b>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</b> (유형별 세부지원 내용(p3~6) 참고) |
| 7.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공급기업 및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(S/W(가맹본부)형) 가맹점 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가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(S/W(가맹본부)형)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(S/W(가맹본부)형) 신청일 현재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가맹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(S/W(가맹본부)형)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☐ **(선정취소)*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선정된 후에도 취소 가능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    |
| 4.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|
| 5. 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          |
| 6.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|
| 7.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선정과정

□ **(선정절차)**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① **(<sup>1</sup>단계 서류검토)** <sup>1</sup>서류 제출여부, <sup>2</sup>소상공인 여부, <sup>3</sup>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/부 판단

\*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 하여야 하며, 불응 시 탈락처리

② **(<sup>2</sup>단계 서면평가)** 서류검토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(가맹본부)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

\* 신청 기술별로 개별평가가 진행되어 신청한 기술 전체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수량과 최종 선정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

(예 : 전자철판 2대 사이니지 1대 신청 → 평가를 통해 전자철판 1대 선정)

- **(구입·렌탈·S/W(개별)형)**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,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,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, 기술적합성을 평가

### <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>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| 세부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<br>(30점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 현황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(10점)</li> <li>○ 스마트기술 도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(10점)</li> <li>○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 의지가 충분한지(10점)</li> </ul>      |
|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<br>(20점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(10점)</li> <li>○ 스마트기술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(10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<br>(2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사업 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(10점)</li> <li>○ 의무사용기간 준수, 성과조사 참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(10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적합성<br>(30점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 면적·업종·운영형태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였는지(10점)</li> <li>○ 스마트기술 도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(10점)</li> <li>○ 도입기술이 사업장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(10점)</li> </ul> |

| 배점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-|
| 10 | 10   | 8  | 6  | 4  | 2    |

### < 동점자 선발기준 >

- ①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> 기술적합성 >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>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
- ② ①의 조건에도 동점자 발생 시 신청일 빠른 순으로 선정

- (S/W(가맹본부)형) 사업추진 적합성, 추진역량, 성장 가능성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

<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>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| 세부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사업추진<br>적합성<br>(40점) | ○ 사업계획의 적정성<br>-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점 |
|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술도입의 필요성<br>- 지원사유의 적합성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점 |
|                      | ○ 도입기술 적합성<br>- 해당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합한 기술 선택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|
| 추진역량<br>(25점)        | ○ 가맹본부 추진의지<br>- S/W를 활용한 가맹점 지원 활성화 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점 |
|                      | ○ 가맹본부 기술 활용 역량<br>- S/W를 활용하여 취득된 데이터 선별 및 활용 역량<br>- 가맹본부 내 S/W 기술 활용 관련 전담인력 배정여부 등 | 10점 |
| 성장<br>가능성<br>(20점)   | ○ 성장가능성(기대효과)<br>- 기술도입을 통한 가맹점별 경쟁력 강화 등 성장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|
| 사후관리<br>적정성<br>(15점) | ○ 사후관리의 적정성<br>- 신청 가맹점의 관리 방안, 가맹점의 기술 사용 모니터링,<br>사업문의 대응 체계 여부 등                    | 15점 |

| 배점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-|
| 20 | 20   | 16 | 12 | 8  | 4    |
| 15 | 15   | 12 | 9  | 6  | 3    |
| 10 | 10   | 8  | 6  | 4  | 2    |

\* 상기 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되는 경우 2단계 평가 대상에 사전 안내

\*\* 자세한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는 S/W 가맹본부형 사전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

- ☐ (우선지원) 아래 우선지원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하여 지원

| 구분 | 우선지원 대상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'25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소재 소상공인*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서해5도(백령도, 대청도, 소청도, 연평도, 소연평도)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  |
| 3  |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(환경부 인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재기지원 신속처리제(패스트트랙) 적용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강한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글로벌소공인, 백년소상공인, 민간투자 소상공인 |

\* 공주 알밤 특구,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,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, 도자산업 특구, 쌀산업 특구, 저탄소·유기농업 특구, 백신산업 특구, 참외산업 특구, 장류산업 특구

## 5. 향후일정

| 사업신청 | 서류검토 및<br>평가·선정 | 기술컨설팅(S/W제외)<br>및 계약체결 | 기술보급 및 증빙제출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~9월  | 10월             | 10월                    | 10월         |
| 소상공인 | 공단, 전문기관        | 소상공인, 공급기업             | 소상공인, 공급기업  |

\*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

❖ **추진주체별 역할** \* 세부 역할은 운영지침 제2장 참고

- (공 단) 지원사업 운영 관리·감독 총괄
- (전문기관) 지원사업 행정지원 (민원대응, 기술컨설팅, 계약관리 등)
- (공급기업) 기술설치 및 사용법 교육, 기술 사후관리 등
- (소상공인) 자부담금 납부, 의무사용기간 준수,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협조 등

□ **(선정발표)** 대표자 연락처로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며,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

□ **(기술컨설팅)** 소상공인에게 업종·지역·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,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

\* 기술컨설팅은 선정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미수행 및 미협조 시 기술지원은 불가

\*\* 선정 후 원칙적으로 기술변경은 불가하나, 불가피한 사유(기술 설치불가, 재고부족, 기존 기술과 호환 불가 등)의 경우 공단 승인 하에 기존 금액 내 동일 분류의 기술로 변경 가능. 단순변심·상위사양 선호 등은 기술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□ **(계약체결)**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,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서명이 아닌 법인인감 날인 필수

□ **(기술보급)** 계약체결 후 공급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술을 보급하며, 소상공인은 검수확인서에 서명

\* 기술보급 후 소상공인 단순변심, 기능·성능에 대한 오인 또는 사전 확인 부족 등으로 계약철회 시 자부담금 환불은 불가하며, 철거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

## 6.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(필독)

- ☐ **(의무사용기간)** 소상공인은 의무 사용기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유지·관리 필요(구입형 2년, 렌탈·S/W형 1년씩 최대 2년)
  - \* 렌탈·S/W형은 중도해지 시 既 납부금액(월납입료 및 부가세) 반환 불가
  - 휴폐업, 사업장 이전 등으로 기술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지원금 반납 또는 지원받은 기술 전부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\*해야 함
  - \* 구입형/렌탈형은 계약승계 또는 이용자 변경, S/W형은 계정변경 또는 미사용기간 정산
  -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
- ☐ **(설치비용)**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,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
- ☐ **(거래책임)**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,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공급기업에 있음
  -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공급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
- ☐ **(현장점검)**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
  -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
- ☐ **(활용도점검)** 기술보급 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 기간 동안 활용도 점검\*을 받고, 그 결과에 따라 연장 및 중단 여부 결정가능
  - \* (구입·렌탈형) 연 1회, (S/W형) 분기별 1회
- ☐ **(성과관리)** 사업 지원 연도로부터 5년 간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(현장·유선조사 등)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

## 7. 유의사항

### ① 불법브로커 부당개입

**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**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| 부당개입 주요유형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 |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    |
|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|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           |
| ③ 허위 대출 약속    |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        |
| ④ 정부기관 등 사칭   |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|
| ⑤ 부정청탁        | 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|
| ⑥ 계약불이행       |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|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#### 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

- (콜센터) 1533-0100 / 1600-6185
- (현장접수)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

## ② 부정·부당행위 관련 유의사항

### ※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

- ① 본 사업의페이백 등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 또는 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·지급받은 경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. 또한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-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지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
-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

아래와 같은 부정·부당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 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, 형사처벌 등 가능

- **(페이백)** 공급기업 또는 영업대행사 등이 기술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, 자부담금 또는 부가가치세 지원, 공단에 고지되지 않는 별도 할인 등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
\* (예시) 공급기업 A사가 소상공인 B에게 “사업 선정 시 자부담금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”거나 “계약 후 별도 할인금을 지급하겠다”고 안내

- **(영업대행 등 관리책임)** 공급기업이 자체 영업판매 과정에서 제3자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관한 책임은 공급기업에 있음

- **(대리신청)** 공급기업 또는 제3자 등이 소상공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업 신청절차를 대신 수행하거나 특정 기술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

- 공단은 신청과정에서 접속기록(IP 주소) 등을 통해 대리신청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, 동일 IP에서 다수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\* (예시) 공급기업 B사가 소상공인에게 “사업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”며 개인정보, ID/PW 등을 수취하여 신청절차를 대행하고 자사 기술을 선택

### 3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

- 공고내용 미숙지,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,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, 계약서,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(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)  
\*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: [www.sbiz.or.kr/smst/index.do]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
-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,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
-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, 선정 제외·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## 8. 지자체 지원

- **(자부담 지원)**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\*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**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**

\* (지자체 소속 소상공인)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/ 지원 업종·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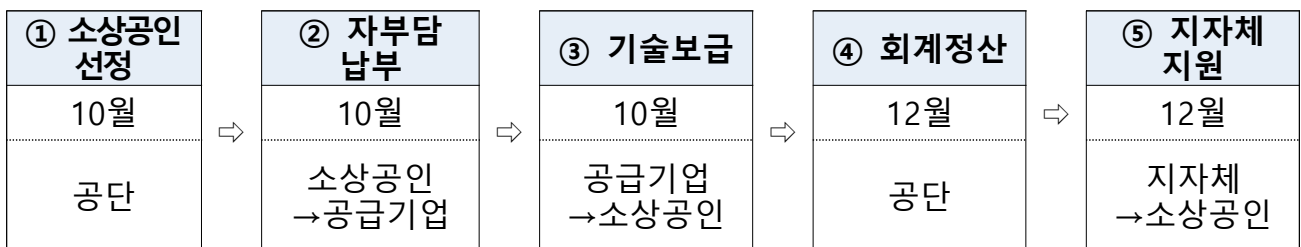
-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### < 협력 지방자치단체 >

| 구 분 | 지 역      | 담당부서    | 문의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  | 경기도 광명시  | 일자리경제과  | 1688-3399    |
|     |          |         | 02-2680-7970 |
| ②   | 강원도 양구군  | 보건정책과   | 033-480-7111 |
| ③   | 서울시 관악구  | 지역상권활성화 | 02-879-5743  |
| ④   | 충청남도 계룡시 | 경제산업과   | 042-840-2493 |
| ⑤   | 세종시      | 보건정책과   | 044-300-5732 |
| ⑥   | 전라북도 익산시 | 소상공인과   | 063-859-5218 |

- **(지자체 지원 절차)**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이후 진행, 소상공인 선 자부담 납부 → 후 지자체 정산

### < 지자체 지원 과정 >



\*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

## 9. 참고자료

- ☐ 【참고 1】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(소상공인)
- ☐ 【참고 2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
- ☐ 【참고 3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
- ☐ 【참고 4】 소상공인 제재기준(운영지침)
- ☐ 【참고 5】 소상공인 확인 기준

## 10. 문의처

- ☐ (지원사업 문의처) 개별 소상공인 ☎1600-6185 (스마트상점 전문기관)  
S/W가맹본부 ☎042-363-7806, 7807 (스마트상점팀)
-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 모집공고 및 FAQ(p20, 참고2) 확인 후  
연락 부탁드립니다.

##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(소상공인)

### <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(선정 후) >



\* S/W형은 활용도 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연장 계약 체결

\*\* S/W 가맹본부 유형의 경우, 추진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

##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

### 공통사항

#### 1.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##### < 신청절차 >

- ① 사업 전용 홈페이지([www.sbiz.or.kr/smst/index.do]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) 접속
  - ② '소상공인 로그인' 버튼 클릭
  - ③ 로그인 화면 이동(회원가입 버튼 클릭)
  - ④ 회원가입(대표자 개인정보로 회원가입)  
\* 회원정보가 既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
  - ⑤ 대표자 ID로 로그인
  - ⑥ 모집공고 선택
  - ⑦ 사업 신청 버튼 클릭
  - ⑧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
- ※ 자세한 신청절차는 [(붙임) 사업신청 매뉴얼]을 참고

#### 2.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가요?

- 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지원제외 업종 제외)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면 가능합니다.
- ☐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(경험형, 상생형, 패키지형 등 포함)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, 신청이 불가능하나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## < 유형별 추가지원 가능여부 >

| 기존 지원이력 |           | 구입형   |       | 렌탈형      | S/W형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| 보편·일반 | 배리어프리 |          |      |
| 지원이력 無  |           | 가능    | 가능    | 가능       | 가능   |
| 지원이력有   | 보편·일반 지원  | 불가    | 가능    | 배리어프리 가능 | 가능   |
|         | 배리어프리 지원  | 가능    | 불가    | 불가       | 가능   |
|         | S/W 기술 지원 | 가능    | 가능    | 가능       | 불가   |

### 3.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어떤 기술인가요?

- ☐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 무인정보단말기란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\*를 말합니다. 중기부와 공단은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,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\*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,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

\*\*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(<https://kioskui.or.kr/index.do>)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

- ☐ 공단에서는 현재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로 키오스크, 테이블 오더, 무인판매기를 보급하고 있으며, 상세 기술명단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4.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
- ☐ 네.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,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,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합니다.

### 5.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
- 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○ 발급방법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\*에서 온라인 발급

\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[sminfo.mss.go.kr](http://sminfo.mss.go.kr))

### 6.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☐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확인경로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→ 스마트기술 → 기술현황\*

\* URL : <https://www.sbiz.or.kr/smst/bsns/product/list.do?key=2111306033994>

## 7.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☐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확인경로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→ 스마트기술 → 기업현황\*

\* URL : <https://www.sbiz.or.kr/smst/bsns/company/list.do?key=2303236167053>

## 8. 홈페이지에 없는 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☐ 아니요.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
## 9.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?

☐ 없습니다. 단,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한도 및 금액은 동일합니다.

## 10. 구입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?

☐ 네.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## 11. 공급가액의 80%(보편기술의 경우 60%)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대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?

☐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정부지원금(국비) 지원 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

\* (일반·배리어프리 기술) 70% → 80%로 상향, (보편기술) 50%→60%로 상향

## 12.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 되나요?

☐ 네. 자부담금이 납부(신용카드 결제, 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)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**13.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.  
꼭 줘야 하나요?**

- ☐ 네.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.
-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하며,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, 입금자명, 입출금 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.
  -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(OOO페이)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.

**14. 기술 보급 전/후 기술 변경은 가능한가요?**

- ☐ 아니요.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- 단, 기술 보급 전 불가피한 사유(기술 설치불가, 재고부족, 기존 기술과 호환 불가 등)의 경우,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가능합니다.
  - 이때, 기존 금액 내 동일 분류의 기술로만 변경이 가능하며, 단순 변심 및 상위 사양 선호 등은 기술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**15.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매장 내 공사비용도 지원되나요?**

- ☐ 아니요.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(천장 공사, 출입구 공사, 전기공사 등)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
**16.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 
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?**

- ☐ 아니요.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, 화면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
## 17. 기술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?

- ☐ 네.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 (국비 지원기간 동안 의무사용)

| 구분         | 계약기간 | 의무사용기간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입형        | 2년   | 2년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렌탈형(1년 약정) | 1년   | 1년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렌탈형(2년 약정) | 2년   | 2년        | 국비지원 연장 시,<br>의무사용기간도 자동 연장<br>(국비지원 기간 = 의무사용 기간) |
| 렌탈형(3년 약정) | 3년   | 2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S/W형       | 1년   | 1년(최대 2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또한,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-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,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. 이를 지키지 않을 시,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18.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,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☐ 휴·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하시거나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.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,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.

## 19.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
- 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(1600-6185)로 문의 가능하며,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.

## S/W 관련사항

### 1. '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' 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S/W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?

- ☐ 과거 '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' 수혜 이력이 있는 상점이라도, S/W형 기술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이번 사업을 통해 S/W형을 지원받은 경우, 향후 다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유형(구입형, 렌탈형 등)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그러나, '24~'25년 SaaS(가맹본부, 독립점포)로 지원받은 상점이 S/W형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상점당 S/W형은 한 번만 지원가능합니다.

### 2. 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☐ 보급받은 기술은 변경이 불가하며, 최초 선택한 S/W 기술에 한하여 활용도 점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.

### 3. S/W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
- ☐ 소상공인이 납부할 사용료(공급가)는 별도로 없으며, 공단에서 공급 기업에게 직접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지급합니다.
- ☐ 다만,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게 납부하고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은 불가합니다.

#### 4.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☐ 소상공인 상점에 S/W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이용 중인 기술(무료·기본형 등)과 신규 신청한 기술(고급형 등)의 기능 및 서비스 범위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 불가합니다.
  -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, 사업비 환수,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5.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
- ☐ 사업 지원(최대 2년) 종료 이후, S/W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공인 및 공급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
- 국비지원(최대 2년) 이후 소상공인은 해당 S/W 기술 이용을 위한 구독료를 별도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.

#### 6. 기술을 사용해보니 불필요한 경우, 중도해지 가능할까요?

- ☐ 계약기간(1년단위)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. 단, 1년 사용 후에는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S/W는 매월 사용해야 하나요?

- ☐ 네. S/W형은 월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지원기간 동안 매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##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

### 1.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?

- ☐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(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) 또는 부당거래(페이백, 끼워팔기 등) 일체를 말합니다.

#### <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>

- ① 공급기업,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·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, 접대를 요구
- ② 소상공인이 특정 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, 접대를 요구
- ③ 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, 접대를 제공
- ④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
- ⑤ 소상공인이 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,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
- ⑥ 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,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

### 2.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☐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브로커, 공급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  - 관련 내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내 게시된 '부당행위 금지 안내영상'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\* 접수처 : 1600-6185 / smart@semas.or.kr

## 가맹본부

### 1.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사업신청이 불가한가요?

- ☐ 불가합니다. 브랜드별로 20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소속 가맹점이 기술 보급을 원하시는 경우, S/W 개별점포 모집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### 2.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?

- ☐ 가맹본부입니다. 실제 지원대상은 참여 가맹점(소상공인)이며, 가맹본부는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여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
### 3. 자부담 금액과 부가세 부담은 누가 하나요?

- ☐ 가맹본부가 S/W 구독비용 10%와 부가세 10%를 일괄 부담합니다. 실질적으로 가맹점(소상공인)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
### 4. 여러 가맹점포가 신청하는 경우, 지급보증보험 가입 주체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?

- ☐ 가맹본부가 가입 주체이며, 가맹점 전체의 지원금액(국비의 90%)을 합산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 1건을 일괄 발급·제출해야 합니다.

### 5.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☐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공단에 공유해야 합니다. 폐업한 가맹점은 폐업신고한 월까지만 기술보급기간으로 인정하며, 가맹본부는 해당 기술을 양도받을 가맹점(소상공인)을 찾아야 합니다.

**참고 3****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**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3409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102 중        | 담배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209 중        | 유통담배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333          | 담배 도매업 (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463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64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811 중        | 약국, 한약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859 중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993 중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<br>※ 단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2991 중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6211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6212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821 중        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3992          |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3999 중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4             | 금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5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6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8             | 부동산업<br>※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<br>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11, 712      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1            | 수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904 중        | 감정평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330 중        | 홍신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3      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9 중       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6             | 보건업<br>※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113       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121          |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2 중       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42          | 카지노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49       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91          | 무도장 운영업 (댄스홀, 콜라텍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12 중       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※ 단,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992       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999 중       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참고 4****소상공인 제재기준(운영지침)**

| 제재등급 | 위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재조치 및<br>환수/반환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의   | ○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으로 휴·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부반환<br>또는 전액반환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의무사용기간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고   | ○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·보완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정취소 | ○ 지원대상의 기준(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)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부반환<br>또는 전액반환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제한<br>1년 이하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,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액반환<br>또는 일부반환,<br>참여제한<br>3년 이하 |
|      | ○ 공급기업(판매대행업체 등 포함)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공급기업(판매대행업체 등 포함)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,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소상공인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(페이백, 리베이트 등)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액반환<br>또는 일부반환,<br>참여제한<br>1년 이하 |
|      | ○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○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정부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,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,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·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-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, 경고 1회

**참고 5****소상공인 확인 기준(매출액, 상시근로자)**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19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40억원 이하 |
| 2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20억원 이하 |
| 4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1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15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| C20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| C25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| C26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29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0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 | D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00억원 이하 |
| 18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9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80억원 이하  |
| 20.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1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2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| C1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| C16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17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 | C27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0.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1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60억원 이하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50억원 이하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<br>40억원 이하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30억원 이하  |
| 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 | N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 R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5억원 이하 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 | C3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| Q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     | S(S94 제외) |                    |

**비고**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| 업 종            | 기 준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|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|
| 그 밖의 업종        |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|

##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### 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- ① 임원\* 및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
  - \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(감사 포함), 개인기업 대표
-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 - \* 근로계약서 등 확인
-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\*의 연구전담요원
  - \* '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  - \*\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 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- ④ 단시간근로자\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  - \* '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  - \*\* 근로계약서 등 확인